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석유제품의 종류 및 공급가격) 이 계약에 따라 공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다른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석유제품명	단 가	비 고
휘 발 유 경 유	공사가 정하는 주유소 공급가격	

제2조(주문 및 인도) ① 주유소는 공사가 정하는 양식의 주문서에 따라 공사 영업일의 17:00까지(당일 배송 요청시에는 오전까지) 주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주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급 가능한 석유제품을 주유소 소재지에서 인도한다. 다만, 주유소는 인도장소를 변경하거나 석유제품 적재 후 주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주유소는 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정유사 또는 운송사를 포함)로부터 석유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품질 및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 시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인수 후 7일 이내에 관련 견본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석유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은 석유제품이 인도장소에서 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정유사 또는 운송사를 포함)의 인도장비 및 설비의 연결 점을 통과할 때부터 주유소에 귀속된다.

- ⑤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정부의 명령, 노동쟁의, 석유수급 상황의 악화로 인한 생산물량감소, 제품생산시설의 가동불능, 제품 운송수단의 사고 등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유소의 주문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⑥ 공사는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3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처분의 최종 확정 전이라도 석유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3조(대금지급 조건) 주유소는 석유제품 주문 시에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선 입금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다만, 대금정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월말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주유소의 권리와 의무) ① 주유소는 계약기간 중에 각 분기별로 해당분기 판매량의 50% 이상을 공사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구매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유소는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용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필요시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주유소는 POS시스템 운용 및 공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주유소는 인건비 절감, 사은품 미지급 등 원가절감과 적정마진 책정 등으로 판매가격 인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가 이에 관련된 자료나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주유소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설치등록증 등 주유소의 영업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공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제품 품질) 공사는 주유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한다.

제6조(주유소의 법규준수) ① 주유소는 계약기간 중 석유제품 취급·판매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확보, 유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승인과 허가를 얻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유소는 구매한 석유제품의 규격, 품질, 상품명 등을 유지하고 인수 당시의 상태 및 품질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취급, 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 인도나 인수를 지연하여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주유소의 환경개선(시설개선)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 여타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종료일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지급기에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파산절차(청산이나 해산을 포함)나 채무자회생절차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휴업 또는 법적 분쟁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4. 석유판매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나 사업이 제3자에게 임대 되거나 제3자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
5. 정부조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급보증자가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또는 거래중지 되는 경우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급보증자가 정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7. 주유소의 영업상 중요재산이나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다른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8.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여타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9. 석유판매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권리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10.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한 여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

행이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나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 여타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제10조(통지 의무) ① 일방당사자는 대표자, 상호, 주소, 영업장소의 변경이나, 합병, 분할, 주유소 매각, 기타 당사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유소가 계약기간 중 영업 폐쇄나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지위나 이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승계) 이 계약은 주유소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승계인, 양수인에 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분쟁 해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제14조(기타) ① 주유소는 공사의 대리인이나 피용인이 아니며 항상 독립된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공사는 알뜰주유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제휴 신용카드

발행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유소는 POS시스템 및 주유소 개선시설(캐노피, 가격표시판, 폴싸인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주유소는 계약해지(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 제외) 시 알뜰주유소로 인식될 수 있는 폴싸인, 디자인 등을 주유소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정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 포함)에서 지원된 관련비용은 환수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한 국 석 유 공 사

주 유 소

사 장

(인)

대표자

(인)